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초단시간 근로 실태와 시사점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과 고령자,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용자는 초단시간 계약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며 편법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 고령과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공공부문에 분포하는 반면, 청년의 경우 민간 부문의 영세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상근로자와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특히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다.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는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하다.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IKEA)는 2014년 우리나라에 1호점을 열면서 매장 직원 상당수를 정규직이지만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모집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8%를 크게 밑도는 8.5%

였고,¹⁾ 정규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 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경험한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 인 일이 아니다. 국내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단 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을 뿐 근로조건은 시간 비례 적용이 원칙이다. 이론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높고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거나 전일 제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를 선 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절된 근로 시간이 업무 범위를 제한하여 단시간 근로는 경 력개발에 부정적이고, 저임금과 불규칙한 일정 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국에 서는 단시간 근로의 극단적 형태인 영시간 계약 (zero-hour contract)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처럼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에게 부정적일 가능성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초단시간 근 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가 사회문제로 비 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적

1) OECD (2024), Part-time employment rate. <https://doi.org/10.1787/12ad596c-en>. (접속일자: 2025년 8월 22일)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일자리 특성, 근로조건을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의 효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년 이상 계속 고용 시에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도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그마저도 제외된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미비는 사용자가 초단시간 계약을 선호할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통상근로자 대신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럿 고용하는 소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가 초단시간 계약으로 절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주 10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과 근속기간 1년, 주 2일 근무를 상정한다.

- 퇴 직 금: $10,030\text{원} \times 10\text{시간} \times 4.34\text{주}$
= 435,502원
- 연차휴가: $10,030\text{원} \times 10/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
= 20,060원²⁾
- 주휴수당: $10,03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4.34\text{주}$
= 87,060원

퇴직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14만 3,412원으로 기본급 43만 5,502원의 30%에 달한다. 이는 근로자 1명과 20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보다 2명과 10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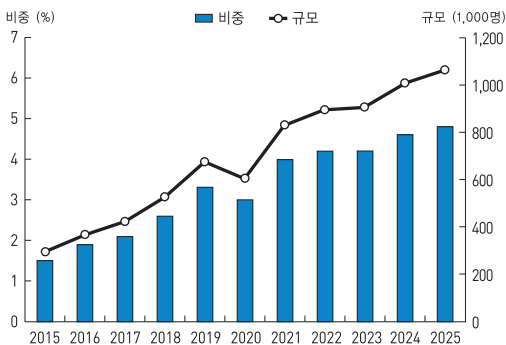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 형태 및 사유와 무관하게 조사 직전 주의 주업 취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2)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상정한다.

취업자로 집계되나, 본고에서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초단시간 근로자를 조사 직전 주의 주업 취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그림 v-1).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는 2015년 29.6만 명에서 2025년 106.1만 명으로 3.6배 증가했다. 2020년에 6.7만 명 감소한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18년과 2019년, 2021년, 2024년에 각각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임금근로자의 1.5%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도 2025년에 4.8%로 증가했다.

[그림 v-1]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2015-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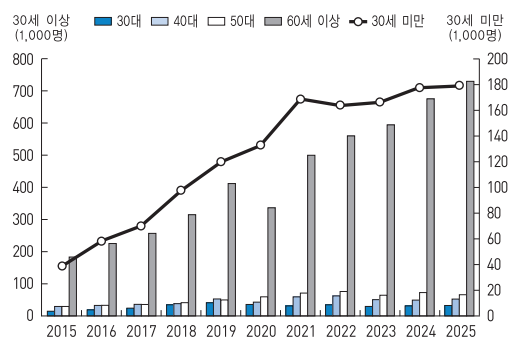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제 연령대별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자(그림 v-2).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증가세

도 빠르다. 고령 초단시간 근로자의 빠른 증가세는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일 것이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사실상 초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령자는 체력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할 유인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가지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서 30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빠른 증가세는 우려할 만하다. 고령자보다 규모와 비중은 작으나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세는 고령자 이상이다. 고령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18.4만 명에서 2025년 73.1만 명으로 4.0배 증가했는데,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동일 기간 3.9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4.6배 증가했다. 고령자와 달리 청년을 대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를 초래했을 법한 정책적 개입은 없었음을 고려하면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쪼개기” 등 편법 고용의 결과로 보이며,

[그림 v-2] 연령대별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 2015-2025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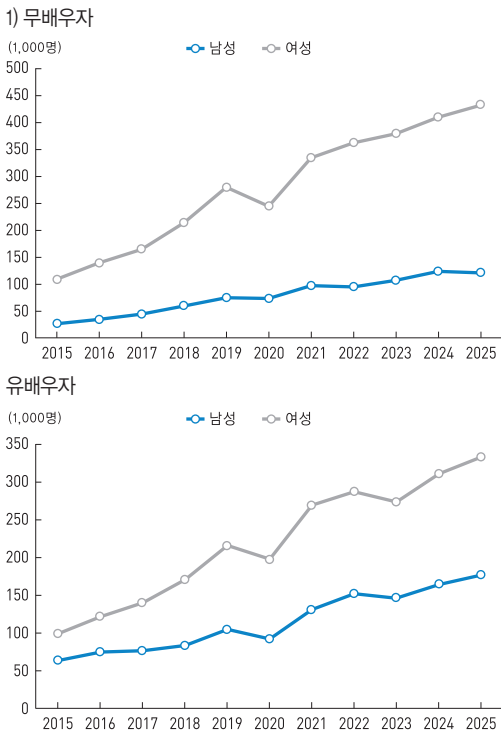
이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별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그림 v-3), 여성의 비중이 약 70%이고 그 증가세도 남성보다 빠르다. 여성을 배우자 유무로 세분하면, 무배우 여성의 경우 2015년 10.8만 명에서 2025년 43.2만 명으로 4.0배 증가했고, 유배우 여성의 경우 동일 기간 9.9만 명에서 33.3만 명으로 3.4배 증가했다. 무배우자 여성의 증가세가 빠른 것은 여성 초단시간 근로

자의 증가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가 아님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도 무배우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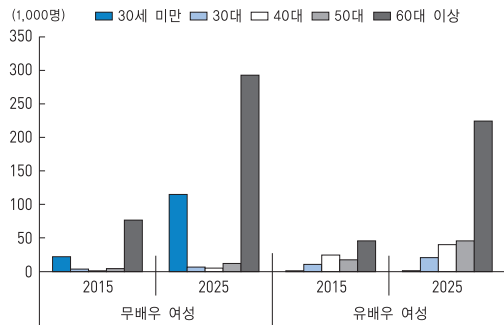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그림 v-4),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고령층에서 주로 증가했다.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고령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v-3] 성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 2015-2025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2) 무배우자는 미혼, 사별,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4] 연령대별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 201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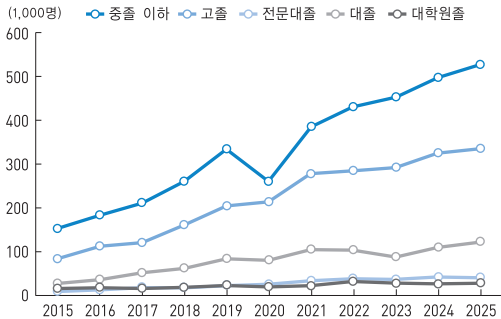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2) 무배우자는 미혼, 사별,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5]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학원졸 학력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고학력 초단시간 근로자의 빠른 증가세이다.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 비중이 큰 저학력의 경우 세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의 60% 이상이 고령자로, 중졸 이하 초단시간 근로

로자의 규모는 그 추이가 고령자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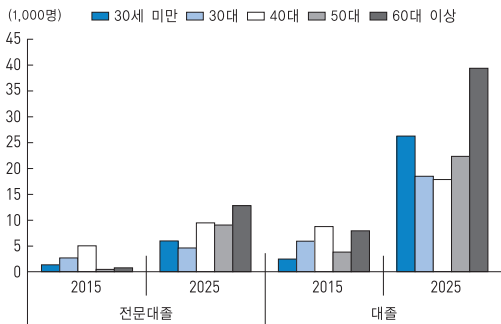
[그림 v-5] 학력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 2015-2025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학력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대별 규모를 살펴보면(그림 v-6), 고학력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고령층의 증가세가 빠르다. 대졸의 경우 청년층의 증가세가 다음으로 빠르다. 고학력 고령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의 미스매치가,

[그림 v-6] 연령대별 고학력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 2015, 2025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학력 청년의 경우 편법 고용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결과이다.

정리하면, 초단시간 근로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임금 근로자의 5%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근로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령자와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정책적 개입의 결과로 보이나, 청년의 경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초단시간 일자리의 특성

다음으로 초단시간 일자리의 업종과 직종,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60% 이상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공공부문 업종에 분포하나, 청년의 경우는 분포 양상이 다소 다르다(표 v-1).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50% 이상이 공공부문 업종에 종사하나, 청년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민간 부문 업종에 다수 분포하며 '교육 서비스업'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50% 이상이 '단순 노무 종사자'이나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v-2). 초단시간 근로자의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으로 분포하는데,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분포 양상이 위와 동일하나 청년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1〉 초단시간 일자리의 업종 분포, 2025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A 농업, 임업 및 어업	1.8	0.2	0.8	1.1
B 광업	0.0	0.0	0.0	0.0
C 제조업	16.6	1.0	12.1	7.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0	0.0	0.0	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6	0.0	0.0	0.0
F 건설업	12.1	1.1	6.6	2.7
G 도매 및 소매업	59.4	35.4	6.5	41.1
H 운수 및 창고업	8.2	1.9	2.8	4.7
I 숙박 및 음식점업	119.2	87.3	14.4	90.3
J 정보통신업	5.1	2.3	1.7	3.3
K 금융 및 보험업	5.5	0.0	3.5	5.4
L 부동산업	10.7	0.0	10.3	7.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1	1.5	9.9	2.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1	1.6	11.2	11.4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1.0	0.1	150.2	118.4
P 교육 서비스업	101.3	29.8	20.3	79.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8.0	2.5	442.6	346.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9	11.4	2.7	11.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2	2.7	28.5	23.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3	0.4	6.9	9.3
U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0.0	0.1

주: 1) 2025년 수치로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2〉 초단시간 일자리의 직종 분포, 2025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관리자	3.3	0	3.3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6.1	26.2	36.9	77.7
사무 종사자	49.5	9.5	29.4	30.9
서비스 종사자	187.4	77.8	76.1	157.5
판매 종사자	61.3	42.2	8.3	47.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	0	0.4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0.6	8.3	4.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7	1	3.2	3
단순 노무 종사자	625.4	21.9	565.2	443.3

주: 1) 2025년 수치로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초단시간 일자리의 규모 분포를 살펴보자(표 v-3). 60% 이상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79.8%로 가장 높다.

〈표 v-3〉 초단시간 일자리의 규모 분포, 2025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5명 미만	414.2	87.4	276.4	312.3
5~9명	256	55.6	175.8	181.3
10~29명	233.5	20.8	184.8	164.2
30~99명	99.7	9.2	62.3	68.9
100~299명	29.6	2.3	14.9	19
300명 이상	28.1	3.9	16.8	19

주: 1) 2025년 수치로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리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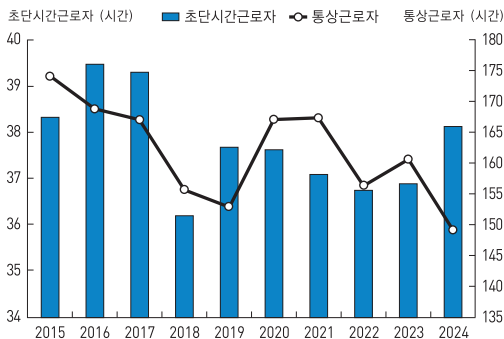
령자와 여성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돌봄 등 정책적 개입으로 공공부문 업종에 다수가 분포하나, 청년의 경우 민간 부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데 따른 부정적 효과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7),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38시간 정도였던 초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대유행과 함께 36시간으로 감소했으나

[그림 v-7] 소정근로시간 추이,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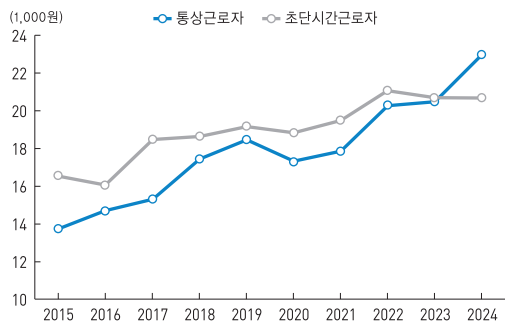


주: 1)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추가 근무 시간은 미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24년에 38시간으로 회귀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2021년 167시간에서 2025년 149시간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상근로자보다 높았으나 2024년에 역전되었다(그림 v-8). 다만 이는 정액 급여만 비교한 것이므로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통상근로자보다 낮을 것이다.

[그림 v-8] 시간당 임금 추이,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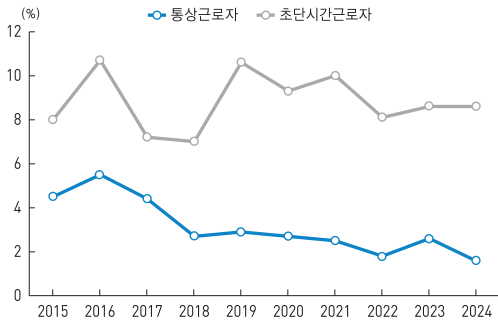
주: 1) 시간당 임금은 정액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평균 시간당 임금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상근로자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그림 v-9).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8.0%로 통상근로자와의 격차가 3.5%p였으나,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통상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며 격차가 커졌다. 2024년 초단시간 근로



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으로, 통상근로자의 1.6%보다 7.0%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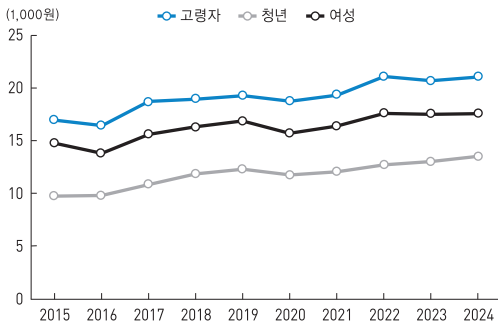
[그림 v-9] 최저임금 미만율, 2015-202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취업 취약계층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10), 고령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평균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우도 평균의 85% 정도인데, 상당수의 여성 고령

[그림 v-10] 시간당 임금 추이: 취업 취약계층,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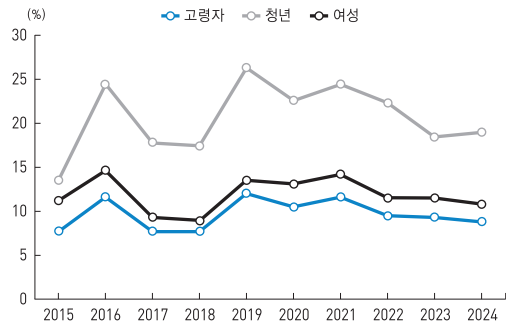


주: 1) 시간당 임금은 정액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 취약계층 중에서도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여준다(그림 v-11). 취업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청년이 가장 높고, 여성, 고령자 순이다. 2024년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고,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약 10%가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았다.

[그림 v-11] 최저임금 미만율: 취업 취약계층, 2015-202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리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상근로자보다 높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로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취업 취약계층 중에서도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 가장 낮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충의 필요성

그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인 휴가와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을 적용할 필요가 적고 계산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할 의미도 적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는 근거가 부족하다. 예컨대, 이연임금의 성격이 강한 퇴직금 적용 여부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는 사용자가 초단시간 계약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며 “쪼개기” 등 편법 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이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청년, 여성 등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청년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정책적 개입의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을 살펴봐도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열악하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데 따른 부정적 효과가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와 법률의 부족한 정당성과 함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충하여 초단시간 근로가 임시적 근로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